국토교통부		보	도 자 료	· 以下对方
		배포일시	2020. 4. 8.(수) 총 9매(본문 3)	महम्म
담당 부처	국토교통부	녹색건축과	• 과장 김유진, 사무관 백승관, 주무관 김건우 • ☎ (044) 201-3768, 3772, 4753	
보도일시		2020년 4월 9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8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환기설비 기준 강화 · 의무대상 확대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

- (예시) ○○시 직장맘 A씨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를 보고 이사를 결심했다. 딸아이가 기관지가 약해 환기필터가 있는 아파트로 이사해야 하는데 현 법령상 100세대 이상만 환기필터 설치가 의무였다. 직장맘 A씨가 이사하려는 아파트는 직장에서도 가깝고 주변에 산이 있어 딸아이의 건강에는 최적이었지만 환기필터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고민하던 중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환기필터를 의무화 한 것이다.
- □ 환기설비 설치 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민간 노인요양 시설 등으로 확대하고, 환기설비 필터성능을 강화하는 등「건축 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이 오는 4.9(목)부터 변경된다.
- □ 이번 개정은 **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**하기 위한 것 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

-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·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·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하였다.
 - ※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·주상복합 건축물, 단독주택은 환기설비 설치 권장
- 또한,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에 따라 '19.7.1일부터 강화된 환경부 실내 미세먼지 기준*을 고려하여,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

노인요양시설(1천㎡ 이상), 어린이 놀이시설(430㎡ 이상), 영화관(300㎡ 미만) 등의 **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**하였다.

* (지하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) PM10 150→100 μg/m³, PM2.5 50 μg/m³(신설) (어린이집 등 민감계층이용시설) PM10 100→75 μg/m³, PM2.5 70→35 μg/m³

②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

-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**기계**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 대비 1.5배 강화(입자 크기 0.3μm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%에서 60%로 강화)하고,
 -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.2배 강화 하였다.(입자크기 6.6~8.6µm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60%에서 70%로 강화)
- 또한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, 철도 대합실, 영화관,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(KS)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하였다.

③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

- '19.3월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'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대책*'에 따라 개별 보일러가 설치된 건축물 (주택, 업무용 시설 등)에는 허가권자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.
- * ('19.3.15. 보도자료) 가스보일러 및 가스보일러 외 난방시설이 있는 숙박 업소 등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(산업자원부, 보건복지부 등)
- □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"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부

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"라고 하면서,

○ "향후에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"이라고 밝혔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 건축과 백승관 사무관(☎ 044-201-377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







기대에대

감염병 예방 수칙



손바닥, 손톱 밑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!



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!



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(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)



선별진료소*(의료기관)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

*선별진료소 안내: 참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하던, 관합보건소 또는 지약변호+120, 1339 문의



감염병이 의심될 땐 관할보건소 또는 1339, 지역번호+120 상담

중국 여행 시 주의사항



동물 접촉 금지



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



발열, 호흡기증상자(기침, 연후통 등) 접촉 금지



· 기침시 마스크 착용 · 손씻기,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



· 중국 여행 후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· 귀국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 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, 지역번호+120 상담

* 감염병 발생 정보 확인 : (

해외감염병 NOW



발행일: 2020.1,29











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(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)



동물 접촉 금지



발열, 호흡기증상자와의 기최 인후등 등 접촉 금지



호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고,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



게시일: 2020.1.29







붙임2

'여행력 알리기'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









붙임3

감염병 예방수칙





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

[올바른 손씻기 6단계]





<mark>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에절</mark>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

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!







발행일 2019.11,5







자가격리 대상자,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









✓ 발열(37.5°C 이상)
✓ 호흡기증상(기침, 인호통 등)
✓ 폐렴





자가격리대상자 가족·동거인 생활수칙

otag

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

특히 노인, 임산부, 소아, 만성질환,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!
 외부인 방문 제한

Ø

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

Ø

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.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



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



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(식기, 불컵, 수건, 침구등) 구분하여 사용하기

•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청구류 단독세탁

•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



테이블 위, 문 손잡이, 욕실기구, 키보드,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



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주요 증상









